

# 경기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9년 9월 10일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 경기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이하 ‘회사’ 라 함)의 골프대회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되는 공식대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경기위원의 선출) 경기위원의 선출은 대표이사가 한다.

제5조 (경기위원회의 구성)

- ① 경기위원회의 구성은 경기위원장 1명, 경기위원 3~4명으로 구성한다.  
단, 경기위원 중 1명은 골프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지명할 수 있다.
- ② 경기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

제6조 (경기위원장 및 경기위원의 선출)

- ① 경기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② 경기위원장은 경기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③ 경기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참석 분과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경기위원의 임기) 경기위원장 및 경기위원의 임기는 골프대회의 종료와 동시 종결된다.

제8조 (경기위원회의 소집)

- ① 경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경기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경기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간사는 회일의 1일전 일시와 장소, 상정할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장 및 경기위원들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이 모두 동의할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통지의 방법은 서면, 전화, 팩스, 전자적 방법 중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경기위원회의 성립) 경기위원회는 경기위원 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10조 (경기위원회 결의방법)

- ① 경기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결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경기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당해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기위원은 동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경기위원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경기위원회의 업무) 경기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각종 공식대회 대회요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식대회에 대한골프협회 R&A와 USGA가 승인한 골프규칙 적용
3. 각종 공식대회의 로컬룰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식대회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경기주심
5. 각종 공식대회 경기방식 결정 및 시상자 선정 결정
6. 각종 공식대회 참가선수의 참가자격 제한 심의
7. 각종 공식대회에서 로컬룰 위반행위 적발
8. 각종 공식대회 비매너 행위 적발
9.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골프규칙 위반행위 적발

제12조 (골프규칙 위반 행위) 각종 골프대회 중 일어나는 골프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차 경기위원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2차 경기위원장의 결정이 최종결정으로 한다.

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시 상벌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3조 (참가자격의 제한) 각종 골프대회 참가선수의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각종 공식대회에서 스코어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 자
2. 직원 및 캐디에게 폭언, 모욕, 욕설, 성희롱 등을 한 자
3.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4.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자
5.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6. 1년 이내 징계의 종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
7. 코스손상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
8. 폭력, 모욕, 도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9. 회사에서 정한 제반규칙 및 골프에티켓 등을 위반한 자
10.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한 자
11. 직원 및 캐디에게 폭행 및 성추행 등을 한 자

#### 제14조 (참가자격 제한 심사방법)

- ① 경기위원회는 조사관이 되며 조사관은 대표이사의 명예 의한 조사권한을 대행한다.
- ② 조사시는 사실확인 및 증거와 본인을 신문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으며, 참고인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상자는 경기위원회의 조사에 응해야한다.

#### 제15조 (제척, 기피, 회피)

- ① 경기위원장 및 경기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심사사건은 심사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우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적용)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우리 회사 규정 및 대한골프협회 R&A와 USGA가 승인한 골프규칙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9년 9월 11일부로 시행한다.